VILLIV

빌리브 디 에이블 오피스텔 분양공고

신세계건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견본주택 운영 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홍보관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빌리브 디 에이블"은 분양홍보관 관람을 사이버 분양홍보관(https://mapo.villiv.co.kr)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방문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공급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행자 동행불가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체결 등 견본주택 방문 시 당사 홈페이지 및 전화예약(1533-7773)을 통해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예약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소독 발판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비접촉 온도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 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사업 주체가 고지한 기간 및 운영시간 외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공급계약체결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대표전화(1533-7773)를 통해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중일 경우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5.)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신고일(2022.03.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3.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3.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5.)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9조의3 의 1항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수분양자"는 「건분법」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분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 신청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이 발생한 전매 당사자 간의 증거서류(대출승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잔여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빌리브디에이블(1533-7773)은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견본주택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2615호(2022.03.24.)]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건축물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2021-마포구-도시환경인가-2]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공급규모 : 지하6층 ~ 지상23층 1개동 중 오피스텔 34실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2,510.00㎡
–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36,692.23㎡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소형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용도지역지구 등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차 대수 : 228대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42대
– 층별용도 :

구분	용도
지하6층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등
지하1층 ~ 지상3층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시설, 노유자시설
지상4층 ~ 지상23층	공동주택(소형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 시행수탁자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시행위탁자 : ㈜월송홀딩스 ■ 시공사 : 신세계건설(주) ■ 분양대행사 : (주)프라퍼티플래닝
■ 신탁업자(시행수탁자)겸 분양대금 관리자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 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동법 제 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진구역계수(Z)	지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0.11	S4	1.2	D	I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 MMI등급 진도 Ⅶ(0.208g)
■ 입주예정일 : 2025년 07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타입	공급호실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
46	4	46.6500	22.4276	69.0776	50.8195	119.8971	7.1542
47	18	47.4300	23.0344	70.4644	51.6692	122.1336	7.2738
52A	2	52.5200	25.1018	77.6218	57.2142	134.8360	8.0544
52B	2	52.2500	25.5222	77.7722	56.9200	134.6922	8.0130
53A	2	53.7500	25.8214	79.5714	58.5541	138.1255	8.2431
53B	2	53.7900	25.7777	79.5677	58.5977	138.1654	8.2492
58	2	58.7900	27.8885	86.6785	64.0445	150.7230	9.0160
59	2	59.7100	28.6625	88.3725	65.0468	153.4193	9.1571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2022.03.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에게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 청약에 포함 됩니다.

타 입	46	47	52A	52B	53A	53B	58	59	비 고
공급호실(수)	4	18	2	2	2	2	2	2	※ 주민등록 등본 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 당첨 선정
거주자 우선 분양실(수)	1	2	–	–	–	–	–	–	
일반공급실(수)	3	16	2	2	2	2	2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공급호실	층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60%) 1차(10%) 2022.10.31	2차(10%) 2023.03.31	3차(10%) 2023.09.30	4차(10%) 2024.02.29	5차(10%) 2024.08.31	6차(10%) 2025.01.31	잔금(30%) 입주지정일
46	4	최저가	479,880,000	309,200,000	30,920,000	820,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246,000,000
47	18	최저가	493,980,000	318,200,000	31,820,000	844,0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84,400,000	253,200,000
		최고가	503,940,000	324,600,000	32,460,000	861,0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258,300,000
52A	2	최저가	545,570,000	351,300,000	35,130,000	932,0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279,600,000
52B	2	최저가	544,230,000	350,700,000	35,070,000	930,000,000	93,000,000	93,000,000	93,000,000	93,000,000	93,000,000	93,000,000	93,000,000	279,000,000
53A	2	최저가	553,180,000	356,200,000	35,620,000	945,0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283,500,000
53B	2	최저가	553,070,000	356,300,000	35,630,000	945,0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283,500,000
58	2	최저가	610,030,000	392,700,000	39,270,000	1,042,0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312,600,000
59	2	최저가	633,530,000	407,700,000	40,770,000	1,082,0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324,600,000

■ 공통사항
• 본 오피스텔은 총 34실 8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당첨자 대상으로 정당계약 진행 시 필히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 수입인지금액 : 세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 세액 10억원 초과(350,000원)
※ 가산세 : 최대 300% 부과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 '21.1.1부터 적용)
• 본 공급금액은 타입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 됩니다.
• 주차장(오피스텔 설치주차대수 42대분의 면적, 소형주택 설치주차대수 180대분의 면적, 근린생활시설 설치주차대수 2대분의 면적)은 각 설치주차대수 면적을 각 용도별 (오피스텔, 소형주택,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습니다.
• 전체 오피스텔, 소형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은 각 시설별 전유면적(전용면적, 층별공용면적, 벽체공용면적, 부대시설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 소형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 또는 세대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계단,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1533-7773)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소형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계약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 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공급가의 50% 범위에서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을 받으신 경우라도 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금 금액은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할 필요 없음.)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3.24.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5.)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인 1건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견본주택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를 대상으로 호별 무작위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오피스텔	장소
청약일시	2022.03.30(수) 09:00~17:00	견본주택(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음)
추첨 및 당첨자 발표	2022.03.30(수) 17:00 이후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타입 및 호실 무작위로 결정
계약일시	2022.03.31(목) 10:00~16:00	견본주택
청약신청금 환불기간	2022.03. 31(목) 10:00 ~ 2주(은행 영업일 이내)	청약신청시 제출한 본인명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비치) • 본인 도장 또는 서명(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통)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 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 청약 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청약 신청인 명의) • 청약 신청금
법인	• 청약신청서(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 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은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 신청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타입	50,000,000원(금 오천만원)	국민은행	268801-04-24228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의 계약체결 시 각 타입별 중복당첨인 경우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계좌가 환불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 :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군별 타입 및 호실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 2022.03.30.(수) 17:00 이후
• 발표장소 : 견본주택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일정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또는 주소로 안내할 예정이나 기재한 내용의 오류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미통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구 분	내 용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우선 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함
층 · 호실 결정방법	• 타입별 층,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내 용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22년 03월 31일(목) 10:00 ~ 16:00
• 계약장소 : 빌리브디에이블 분양홍보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3, 연락처 1533-7773)
• 계약금은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잔금	국민은행	268801-04-24232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05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05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해당 지정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회사로서 상기 분양수익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주민등록 초본 1통 (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분양신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 세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세액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 세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세액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동구비서류 이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 위임장 (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 받는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수의 분양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 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50%(1~5회차)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10%(6회차)는 현금 자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계약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 될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며, 금융 신용 불량거래자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납부 하여야하며(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대출 불가사유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재외동포의 경우,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불가시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주택자 및 다세대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IV 기타 계약자 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은 "수분양자"의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 및 분양 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단, 분양대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로써는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소형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시설이 복합 계획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소형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동시에 건축허가를 득한 동일 단지 내 건축물이므로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계약자가 본 오피스텔을 추가로 계약할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의 전매를 알선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신청 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 채무 관계 및 그 책임은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 및 요청하는 서류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배석하여 기명날인한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공급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이전 및 승계로써는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07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월송홀딩스 외 1인,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신세계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월송홀딩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월송홀딩스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간 신탁계약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월송홀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월송홀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월송홀딩스와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V 선택 옵션

• 선택옵션은 오피스텔 46, 47, 52A, 53A, 53B, 58 타입에만 적용되며 무상으로 시공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선택 옵션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선택 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설치 시 등기구, 콘센트 위치 등 세부 내용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가변형 벽체 설치 선택 시 외기에 면하는 창호, 천장형 에어컨은 미설치 되며 당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 내 별도 실외기실이 없고 통합 실외기로 설치되어 에어컨이 미설치 된 실2에 에어컨 추가 설치가 불가합니다.
• 선택 옵션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변경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타입	설치 위치	선택 사항
46, 47 ,52A, 53A, 53B, 58	실1	가변형 벽체 설치
		가변형 벽체 미설치

VI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 · 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소형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계약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을 원칙으로 하여 소수점 4째자리까지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공부상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는 47, 59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현장 현황,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전시용조명, 커튼, 전시용가구 및 가전, 소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입면디자인(저층~고층 구간 석재및 도장디자인 포함), 팸플, DA, 외부난간, 조경, 색채, 몰딩, 창호, 유리컬러,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옥탑장식물, 실외기(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설치위치 및 디자인, 외부 로고사인, 외벽마감, 바닥포장, 필로티, 상가간판,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내부 및 본 건물의 내 · 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 · 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 된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창짝순서), 형태가 상이 할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본 건축물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18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사용하며, 시공사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문,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외관 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호실 발코니 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건물의 입면에 적용된 각종 마감재의 재료, 재질, 색상, 색채에 관한 디자인 일체는 인 · 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관련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 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지상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변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부지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하여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의 사업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오피스텔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인허가 과정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배기휀 및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냄새 및 진동,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인 · 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한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안내하는 호실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공동장소인 공개공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호실과 타호실간 또는 단지 외 인접한 건물들로 인한 조망 등의 간섭이 층별 호실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명칭은 '빌리브 디 에이블'이며, 행정구역상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원 일대에 소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은 인허가 과정에 의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되는 DA, 실외기의 위치, 면적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택배 보관함은 지상1층에 통합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후 지하층 보행동선 개선 등을 위하여 택배 보관함 위치가 이동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 경관조명,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실외기,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 및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 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인한 변경이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해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 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 계획, 교통 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오피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사업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써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사업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 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 모형, 세대 모형, 커뮤니티 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1. 일반사항
• 본 사업계획구역(마포4-15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 계획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 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 단지,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 설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흙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일부 계획 변경이 수반되며, 기 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분양홍보관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 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별 시설물,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외관 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계획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 공동주택의 마감 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 ·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오피스,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게시설, 수경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계약전 현장 확인을 통해 인근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주변 모텔 및 간섭이 생기는 건물군, 인근대학교 및 도로의 소음 등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 일대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된바 추후 개발에 따라 현재와 다르게 인접하여 건물군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채광, 조망, 사생활 침해 등은 본 사업자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등 학교 배정은 해당 관할 구청 및 교육청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소형주택)과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분류하여 주거로비, 지하주차장, 코아, 주민공동시설 등을 같이 사용하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3층)은 비주거시설로 구분하되 일부는 동선 및 사용상 공유되는 부분이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3층에 설치되는 노유자시설은 기부채납시설로 현재 구청 계획은 거점형 키움센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변경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이 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응답 스펙트럼 방식으로 적용된 최대 지반가속도(g)는 0.2038여, 이에 따라 내진능력(MMI등급) : Ⅶ등급임.Ⅶ-0.2038g

2. 단지배치/조경/주동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사업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물과 건물 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 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를 통한 이삿짐 반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면적, 생태면적은 인허가 및 현장 실시공시 법적범위내에서 축소될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중 수경시설은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의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환기설비 등에 의하여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악취 등 환경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 출입부는 대지 남측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접근하며 본 시설 특성상 담장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아 외부인이 접근 할수 있는 구조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외관에는 금속 마감재가 설치되며 향후 빗물 등에 의해 오염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특히 돌출 외관부는 각종 오염 발생이 빈번하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외관 남동/남서 구간에는 외장재를 대신하여 BIPV라는 태양광 패널이 부착되어 인접세대에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시공과정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배기구 및 보일러 연도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외장재 간섭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BI 설치등으로 인접세대 야간 눈부심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의 주차장은 별도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차단기 위치상 주거주차장(공동주택(소형주택), 오피스텔)과 혼재되어 사용 될 수 있으며 동일한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하므로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소형주택)과 오피스텔은 지하2층~지하6층,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지하2층에 배정하였음을 인지하며 향후 관리규약에 따라 층별 위치를 협의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시공과정중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타 시설군 주차 시스템이 분양연 허가도서 대비 변경될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쓰레기 보관소, 택배차량 정차소 및 작업공간이 배정되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택배보관소는 지하1층에 배치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시 엘리베이터 1기가 연결되지 않아 사용상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시 일부 대형 차량은 이용이 불가할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중 지하6층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설치되며 기계식주차는 오피스텔에 배정하였으며 총 42대가 주차 되도록 시공됩니다.
• 지하2층부터 형성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며, 지하주차장 내부 층간 이동 통로의 높이는 2.3m입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 됩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지하 주차장에 트렌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트렌치는 구배가 없고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소형주택 법령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1대 미만으로 계획되어 모든 세대가 본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있을수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분양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승강기 인승, 속도, 탑승위치)등은 건축허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 세대는 주변 건물로 조망권, 일조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붕, 옥상구조물,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사용된 CG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 공용부 및 로비 조형물 등의 형태,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외벽에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은 현장 여건 또는 각종 인증 등에 따라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층 복도 끝에는 세대통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가 설치되는 바닥은 하부가 일정부분 오픈되어 있는 철재 간살 구조로 형성되오니 관리자를 제외한 입주자는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각층 복도 끝층 비상시 하부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 이공간의 바닥 또한 상기와 같은 구조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재료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 · 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복도, 층별 입주민 공용공간 및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건물 구조상 채광 및 환기가 되지 않은 구조이오니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 형태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TV 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지붕(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주방배기용 덕트 및 정화조 덕트가 공동주택 공용 PD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환기용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지하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용구간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동주택동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층에 설치되는 커뮤니티시설(라운지) 이용시 사용자에 의한 냄새,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간의 생활의 문제이오니 시행자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층 세대 전면 저층부 돌출에 의해 생기는 바닥은 입주자가 사용할수 없는 공간이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옥탑에 근린생활시설의 주방탈취장비, 정화조 배기장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및 시공과정 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부층 인접세대는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5. 단위세대
• 오피스텔은 4~5층, 공동주택(소형주택)은 6~22층, 공동주택(소형주택) 펜트층이 23층에 구성되며 여러세대가 복도형으로 구성된 형태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각 세대 진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라인중 일부 세대(5개라인-40type, 42type, 43A,B-type, 44A-type)에에 소방관진입창이 4~11층에 설치되며, 설치 세대는 관계법령준수를 위해 중간바가 높게 형성되어 창문손잡이가 높아 사용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정상 접합유리를 설치할 수 없어 안전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집입창임을 표시하는 붉은색 역삼각형 스티커 등이 부착됩니다.
• 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홈네트워크단자함의 설치공간은 분양홍보관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세부 구성, 도어의 위치 및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층별로 통합실외기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전기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의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림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재 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분양홍보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구조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우물천장을 제외한 천장고는 2.6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로 분리하여 설치위치 변경 및 이동이 불가합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에는 소방 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주방 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 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설치 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건축허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 덕트는 노출 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및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 설치로 인한 소음, 악취, 미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환기팬, 온도조절기, 환기 디퓨저,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보일러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 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및 보일러실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는 옥상 조경과 인접하여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및 그 하부층은 구성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각종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펜트하우스 세대는 각 타입별로 테라스 면적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에 외부창이 설치되는 세대는 욕실 특성상 창호 프레임 및 유리에 결로가 생성될 수 있으니 일상 생활중 환기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선택옵션은 오피스텔 46, 47, 52A, 53A, 53B, 58 타입에만 적용되며 가변형 벽체 설치 선택 시 외기에 면하는 창호, 천장형 에어컨은 미설치 됩니다. 또한 당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 내 별도 실외기실이 없고 통합 실외기로 설치되어 에어컨이 미설치 된 실2에 에어컨 추가 설치가 불가합니다.
• 상기 단위세대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마감재
• 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분양홍보관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 시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분양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분양홍보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 등기구, 배선기구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분양홍보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할 시에는 별도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부위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천장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분양홍보관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분양홍보관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가구는 침실 사이즈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랍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 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수입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분양홍보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 두께 등은 현장 여건, 풍동 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아트월 길이 및 위치, 벽체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 모형을 확인 바랍니다.
• 욕실에 창호가 설치된 일부 세대는 결로발생 우려가 있어 환기 등 관리가 필요하며, 주야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마감재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전기/기계
• 본 오피스텔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동절기에 관리 소홀로 동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각 실 내부에 및 보일러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천시 빗물로 인하여 연도 낙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창호를 반드시 닫음을 유지해서 외기침입을 차단해야 하며, 동파방지 열선 전원 관리는 입주자가 해야 합니다. 미준수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발생 등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각 실로 공급되는 가스 배관은 외벽과 계단실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홈네트워크단자함 등이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 및 수납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홈네트워크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각 세대 외부에 직접배기 형식의 토출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악취,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23층)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팬, 주거 및 비주거 정화조용 팬에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및 개수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각 실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이 적용되어 천장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 내부에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배기구(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용, 형태 및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설비가 올라와 냄새 및 분진, 소음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 위치 및 근본적인 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 측정 등을 실시하고, 옥상층 또는 기준층 내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 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 옥외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홈네트워크단자함 위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전기설비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I 기타 주요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타
회사명	㈜한림건축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620,000,000	₩310,000,000	₩260,000,000	₩6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음.

■ 시행사, 시공사, 시행수탁 및 자금관리기관 및 분양대행사

구분	사업주체(위탁사)	시공사	시행수탁사	분양대행사
상호	주식회사 월송홀딩스	신세계건설(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프라퍼티플래닝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1004, 1005호(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서울시 중구 소월로10, 21층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8층 가든파이브라이프동 엘8012호
법인등록번호	110111-0722979	110111-0759493	110111-1348237	110111-7897866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3, 빌리브 디 에이블 주택전시관 (분양문의 : 1533-7773)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apo.villiv.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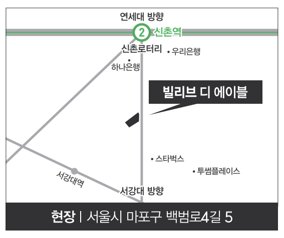

현장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4길 5

견본주택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3

1533.7773

오피스텔 **총 34실**

시행 KB부동산신탁(주) 시공 신세계건설(주) 위탁 (주)월송홀딩스